

웨스터 민스터신앙고백서



제30장 교회의 권징 / 1항

주 예수께서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의 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. 그것은 세상 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(살전 5:12; 사 9:6~7; 마 28:18~20; 행 20:17~18; 고전 12:28; 딤후전 5:17; 히 13:7, 17, 24).

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

(데살로니가전서 5:12)



제30장 교회의 권징 / 2항

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(치리권)가 맡겨 졌다. 그들이 그 받은 치리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, (1) 범죄자를 맬 수도 있고, 풀어줄 수도 있으며, (2)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과 훈를 실시할 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고,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열어줄 수도 있다 (마 16:19; 마 18:17~18; 요 20:21~22; 고후 2:6~8).

**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
(마태복음 16:19)**



제30장 교회의 권징 / 3항

권징의 필요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. (1) 범죄한 형제를 교정 시켜 회복하기 위함, (2)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, (3) 온 교회에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누룩을 제하기 위함, (4)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함, (5)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.

교회 안의 패역한 범죄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의 영예를 더럽힐 수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건을 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교회 전체에 임할까 우려된다 (딤후 5:20; 1:20; 마 7:9; 고전 5; 11:27; 유1:23).



제30장 교회의 권징 / 4항

권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행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그 처사를 조절해야 하는데, 경책, 일시적 수찬 정지 (受餐停止), 또는 출교(黜教) 등으로 처리한다 (고전 5:13; 마 18:17; 고전 5:4~5; 살전 5:12; 살후 3:6,14~15; 딤후 3:10).

외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(고린도전 5:13)

